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경 과

가. 발 의 자 : 송도호 의원 외 13명

나. 의안번호 : 제 56 호

다. 발의일자 : 2022. 8. 8.

라. 회부일자 : 2022. 8. 12.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회의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아. 예비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자. 사고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차.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 개 요

-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이하 ‘시’) 관내에서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가 자체적으로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 이를 수행할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사고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표] 참조).

[표] 제정안 주요 내용

구 성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li> </ul>
제2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사고조사”, “사고조사 보고서” 등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li> </ul>
제3조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난에 대한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가능</li> <li>• 시장은 위원회의 사고조사 독립성 보장 의무</li> </ul>
제4조 (위원회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관련 분야 4급 이상 공무원’, ‘재난유형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15명 이하의 위원 구성</li> <li>• 위원회 간사: 재난 관련 부서의 장</li> <li>• 위원회 서기: 업무담당 사무관</li> <li>• 위원의 임기: 사고조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날짜까지</li> </ul>
제6조 (위원회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원인 및 경위 규명에 관한 사항</li> <li>•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사고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 및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권고</li> <li>•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li> </ul>
제8조 (위원의 해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li> <li>-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li> <li>-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li> <li>-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li> <li>-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li> <li>-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li> <li>-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ul>
제13조 (정보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 비공개 사고조사 정보 외에는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li> </ul>
제14조 (예비 사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 사고조사 시 요청가능 사항: 사고현장의 보존,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 등</li> </ul>
제15조 (사고조사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조사 계획 포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상황과 현장 상태를 반영한 사고조사 방법</li> <li>- 사고 관련자 면담</li> <li>- 사고 관련 문서 목록</li> <li>- 사고조사 일정</li> <li>- 사고조사에 따른 예산편성 등</li> </ul> </li> </ul>
제16조 (청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 실시 가능</li> <li>• 청문회는 개인 사생활 침해 또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실시 불가</li> <li>• 공개원칙 단, 행정절차법 제30조에 해당되거나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할 경우 비공개</li> </ul>
제18조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조사 보고서 포함사항: 개요, 사실정보, 원인분석, 사고조사결과, 재발방지대책 및 건의사항 등</li> <li>• 위원회는 활동을 종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완료.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li> <li>• 사고조사 보고서의 시민 공개</li> </ul>

## ■ 재난 사고조사 관련 법령 검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제69조제1항1)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재량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편,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안전사고 조사 조례’)에 따라 시 관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 이는 각종 화재 및 재난·재해 관련한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표〕 참조)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 소방재난본부가 구조·구급출동 과정에서 자체 조사하는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자살기도, 수난사고, 추락사고 등이 주된 대상임.

---

1) 제69조(재난원인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17. 7. 26.>

② ~ ⑦ (생략)

[표] 최근 3년간 유형별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교통	승강기	인명 감염	자살기도	산악	수난	추락	까임	붕괴	누출	폭발	기타
누계	3,352	1,941	69	16	162	33	129	178	81	126	21	19	577
`21	1,164	624	32	10	162	11	17	73	25	58	21	7	124
`20	1,146	697	19	5	-	17	70	58	27	34	-	6	213
`19	1,042	620	18	1	-	5	42	47	29	34	-	6	240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 따라서 동 제정안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한 중대 재난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것과는 대상의 성격과 범위가 다르며,
- 또한, 현행 「안전사고 조사 조례」가 안전사고 조사를 위해 자문단 운영 및 전문기관 의뢰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시 관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난사고와 관련해 시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가동해 심도 있게 원인 및 경위를 규명하고 시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본 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하겠음.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sup>2)</sup>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sup>3)</sup>는 국토교

2)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민의 생명·신체·재산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재난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원인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에 따른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일체의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3. “사고조사 보고서”란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분석, 결론 및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제18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 안 제2조는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먼저,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일컬으며,
- ‘사고조사’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일체의 과정 및 활동으로 정의하고,
- ‘사고조사 보고서’는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분석, 결론 및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로

-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顛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 외에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해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안 제3조)

**제3조(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발생한 재난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된 재난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서 재난에 대한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발생한 재난과 관련 있는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하여금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사고조사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 제3조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재난에 대한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단서를 통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된 재난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도





### 3)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재난의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
2. 재난유형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사건조사 및 조사 보고서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하고, 업무담당 사무관을 서기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의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먼저, 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재난 유형을 고려해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 ‘재난유형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가’, ‘그 밖에 전문성을 고려해 시장이 인정하는 자’ 중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
- 제2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위원의 양심에 따른 사건조사 및 조사 보고서 작성에 관한 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과 제4항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비밀 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제5항에서는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

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날로부터 최종 사고조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해 적절히 규정하고 있다 사료됨.

- 다만,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지정과 관련해 앞선 안 제3조에 대한 수정의견에서와 같이 소관부서는 사고 발생 시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역시 서울시 재난안전분야 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하고 업무담당 사무관을 서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표] 참조).
-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4조제1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표] 안 제4조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재난의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1.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                  2. 재난유형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자</p> <p>② ~ ④ (생략)</p> <p>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u>재난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하고, 업무담당 사무관을 서기로 한다.</u></p> <p>⑥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시장에게 <u>제출한</u> 날까지로 한다.</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p> <p>1. -----                  2. -----                  3. -----</p> <p>----- <b>사람</b></p> <p>② ~ ④ (생략)</p> <p>⑤ ----- <b>재난안전분야 총괄부서의 담당 서기관을 간사로, 담당 사무관을 서기로 한다.</b></p> <p>⑥ -----                  -----                  ----- <b>제출하는</b> -----                  -----.</p>

#### 4)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등(안 제5조)

제5조(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 총괄 및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와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안 제5조는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위원회의 업무 총괄 및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조사와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5) 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고 원인 및 경위 규명에 관한 사항
2.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고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 및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권고
6.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 안 제6조는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사고 원인 및 경위 규명’,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사고 관련 구조·구

난 작업 및 대응의 적정성’,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등 발생한 재난사고 관련 제반사항을 조사·검토하고

- 또, 활동 결과물인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제안한 재발방지대책 등을 시에 권고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 재난 예방 및 대응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6호는 위원회 업무로서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의결로 결정 시 회의소집, 개의 등의 절차이행으로 위원회 운영효율 저하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 위원장 재량으로 필요한 업무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표] 참조).

[표] 안 제6조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 5. (원안과 같음) 6.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자문위원 위촉(안 제7조)

제7조(자문위원 위촉)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재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로 하여금 필요 시 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문위원을 위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기는 하나 재난의 다양성 및 복합성을 감안해 세부전문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여겨짐.

## 7)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안 제8조 및 제9조)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고조사 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고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그 사고조사 대상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고조사 대상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고조사 대상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고조사 관련 대상 등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사고조사 대상은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 안 제8조는 위원의 해촉과 제9조는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 여겨짐.
- 다만, 안 제8조의 위원의 해촉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4)를 준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조제목과 본문에서 사용하는 용어(“해촉”, “위촉 해제”)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임([표] 참조).

[표] 안 제8조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b>위촉 해제</b>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 ----- ----- <b>해촉</b> 할 ----- -----.

- 4)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위원 스스로가 <u>위촉 해제를</u> 희망한 경우	1. ----- <u>해촉을</u> -----
2. ~ 4. (생략)	2. ~ 4. (원안과 같음)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u>아니한</u> 경우	5. ----- ----- <u>아니하는</u> 경우
6. (생략)	6. (원안과 같음)

## 8) 회의의 의결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0조(회의의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4. 진행 순서
5. 상정 안건
6. 발언 내용
7.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8.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생활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 제1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토록 하고 있으며,

- 안 제11조는 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해 회의명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상정 안건, 발언 내용,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의 기록사항과 기록방법, 회의록 공개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 9) 정보의 공개(안 제13조)

제13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고조사 정보 및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사고조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로 인하여 사고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사고조사 정보 및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로 인하여 사고조사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고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것과 관련해 동 조례안에 따른 재난 사고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sup>5)</sup>의 포괄적 범주에 포함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제5항<sup>6)</sup>에 저촉 될 소지가 있으며,

- 이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오용을 방지하고 조사 내용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려는 행정조사 비밀유지원칙을 감안 할 때 정보공개 대상을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로 최소화하고 조사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고조사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지므로 이를 공개항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임([표] 참조).
- 한편, 사고조사 정보를 공개항목에서 제외하고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만 공개토록 하는 경우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는 사고조사 완료 후 작성되는 것이므로 안 제13조제2항제1호의 ‘공개로 인하여 사고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시기적으로 공개대상 여부와 해당사항이 없게 되어 이 또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5)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안 제13조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3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위원회의 <u>사고조사 정보 및 사고조사 결과보고서</u>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u>사고조사 정보를</u>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u>공개로 인하여 사고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u></p> <p>2. 국가의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p> <p>3.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p>	<p>제13조(정보의 공개) ① ----- <u>사고조사 보고서를</u> ----- -----.</p> <p>② ----- ----- <u>사고조사 보고서를</u> -----.</p> <p>&lt;삭 제&gt;</p> <p>1. (원안 제2호와 같음)</p> <p>2. (원안 제3호와 같음)</p>

## 10) 예비 사고조사 등(안 제14조~제17조)

<p>제14조(예비 사고조사) ① 시장은 사고현장 보존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예비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예비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고 현장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고현장의 보존</li> <li>2.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li> <li>3. 그 밖에 위원회 사고조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제15조(사고조사 계획수립) ① 위원장은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고 상황과 현장 상태를 반영한 사고조사 방법</li> <li>2. 사고 관련자 면담</li> <li>3. 사고 관련 문서 목록</li> <li>4. 사고조사 일정</li> <li>5. 사고조사에 따른 예산편성 등</li> </ol>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30조에 해당되거나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할 경우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7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관련 사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 중앙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안 제14조는 예비 사고조사, 안 제15조는 사고 조사계획, 안 제16조는 청문회, 안 제17조는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예비 사고조사단계에서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사고 관련 자료를 사고현장 관계자들에게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증거를 채택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 요청에 따라 시장은 법원, 검찰, 경찰 등에 관련 사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 경찰, 중앙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11)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안 제18조)

제18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사고조사결과
5. 재발방지대책 및 건의사항 등

② 위원회는 활동을 종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고조사 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조사결과는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18조는 사고조사 보고서의 포함내용, 제출기한, 공개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제정안에 따른 사고조사 보고서에는 개요, 사실정보, 원인분석, 사고조사결과, 재발방지대책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대건설공사현장 사고조사 보고서의 경우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 등), 현장조사내용, 시험결과, 사고원인분석, 결론, 권고사항 및 향후조치, 부록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적절히 규정하고 있다 사료됨.

- 한편, 사고조사 보고서는 위원회 활동을 종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명시하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사고조사 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안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난에 대한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조사 요구에 대한 완결을 짓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

##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관내에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제1항7)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명 없이도 시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재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중대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 다만, 앞선 개별 조항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발생한 재난과 관련 있는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하여금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거나 위원회 간사 및 서기 역할을 수

7) 7) **제69조(재난원인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17. 7. 26.>

② ~ ⑦ (생략)

행토록 하는 것은 해당 부서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기에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 또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이외에 조사 과정을 담고 있는 사고조사 정보는 오용 방지와 조사내용에 대한 이용 제한을 사유로 공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음.